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18가단52179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신성호, 배은서

피고1. 주식회사 A

2. B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준만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양종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기

4.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재국

변론 종결2021. 7. 23.

판결 선고2021. 10. 1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07,744원 및 그 중 22,912,545원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11. 8. 접수 제4134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07,744원 및 그 중 22,912,545원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11. 8. 접수 제4134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6.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E에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8. 2. 1.부터 연 10%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 그리고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약정을 이용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8. 3. 13.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8. 8. 30. 22,912,5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 중 일부 회수되고 남은 금액은 2,084,619원이고, 보증기간만료 후 대위변제 전날까지의 추가보증료는 110,580원이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한편 피고 B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11. 8. 처인 피고 D에게 2017. 11. 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회사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10.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그곳에서 주유소 영업을 해왔는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2015. 3. 5.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8. 26. F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F 주식회사의 위 근저당권은 이후 G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

2)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8. 1. 2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 24. 피고 C에게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1호증의 3 내지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25,107,744원(=

대위변제금 22,912,545원 + 추가보증료 110,580원 + 채권보전조치비용 2,084,61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2,912,54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8.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19. 4. 1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결국 원고가 2018. 8. 30.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 회사는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하게 시가 합계 3,126,223,58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유소(기계설비 등 포함)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5억 5,222만 원,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 피고 C에 대한 채무 2억 3,776만 원, H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330만 원, 주식회사 E에 대한 위 채무 2,250만 원, 주식회사 I에 대한 채무 4,508만 원, J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69,967,400원¹⁾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 변제력을 회복하고자 부득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대한 기존 채권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그 후로는 피고 회사에게 더 이상 휘발유 등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 회사가 피고 C으로부터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아니고, 나아가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을나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 C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게 2017. 8. 17.경부터 휘발유 등을 공급하였는데, 불과 약 5개월 만인 2018. 1. 13.경 그 미수대금이 2억 3,776만 원에 이르렀다.

2) 피고 C은 당초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단100081),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서 2018. 1. 25.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

3) 피고 C은 2018. 1. 17. 위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에 대한 위 미수대금 채무의 변제를 미루다가 주유소 문을 닫고 연락두절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직전인 2017. 12. 4. K에게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주유소는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다.

5)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 회사는 거래처인 G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미수대금 일부변제를 위한 자금이 없어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미 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피고 회사는 2017. 11.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가 2018. 8. 30.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B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을마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 D은 1998. 4. 15.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는데, 2017. 11. 8.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사실, ② 피고 B은 같은 날 혼인기간 중 취득하였던 이 사건 주택을 피고 D에게 증여한 사실, ③ 위 피고들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8. 2. 8.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④ 피고 D은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의 2, 을가 제3호증, 을마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피고들의 혼인기간, 위 피고들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각 기여한 정도, 이혼신고 당시의 위 피고들의 각 재산현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D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을 초과하여 그 전부를 이전받은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8,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 외에 아래와 같은 부동산(시가 합계 161,562,332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6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L 주식회사에 대한 21,315,000원의 카드론 채무,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각 보증채무(합계 1,375,915,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1	정읍시 M 토지의 1/3 지분
2	정읍시 N 토지
3	정읍시 ○ 토지의 1/3 지분
4	정읍시 P 토지
5	정읍시 Q 토지
6	정읍시 R 토지
7	정읍시 S 토지
8	정읍시 T 토지
9	정읍시 U 토지
10	정읍시 V 토지

② 그런데 위 정읍시 소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2011. 2. 21. 아버지인 W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고 B의 특유재산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B, D은 혼인기간 중인 2000. 2. 25.경 인천 부평구 X 토지 및 지상 건물(단층주택)을 피고 D

명의로 취득(매수)하고서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이혼 후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종전에 보유하던 위 부동산(시가 합계 246,305,300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채무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채무(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권최고액 1억 7,724만원) 외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D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 B,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현경

별지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2. 선고 2018가단37503 판결 참조.